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한신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한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재난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권고에 따라 소방 현장지휘관의 책무와 지휘활동 사항에 사고·재난 현장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장지휘관의 책무에 사고·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하고(안 제4조제3항 신설), 현장지휘관의 지휘활동 사항에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